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8가단132421 판결 [(잔부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0514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8가단132421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서영민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702,1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702,1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① 2014. 9. 30. 보증원금 99,000,000원, 보증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29.까지(이후 보증기간이 2018. 9. 28.까지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5. 8. 13. 보증원금 748,000,000원, 보증기간 2015. 8. 18.부터 2023. 8.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D은행으로부터 88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 2) A이 2018. 3. 7.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C은행 및 D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A을 대위하여 2018. 9. 6. C은행에 99,969,924원을, 2018. 11. 14. D은행에 52,402,06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3,250,402원을 회수하여 위 99,969,924원의 채무에 충당하였다.
- 3) 원고는 A으로부터 2019. 5. 29. 5,20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884,402원을 위 99,969,924원의 채무에, 나머지 3,315,598원을 법적절차비용에 각 충당하였고, 2019. 10. 24.

66,000원을 회수하여 16,000원을 위 99,969,924원의 채무에, 나머지 50,000원을 법적절차비용에 각 충당하였으며, 2019. 12. 31. 1,400,000원을 회수하여 1,350,000원을 위 99,969,924원의 채무에, 나머지 50,000원을 법적절차비용에 각 충당하였다.

4)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1,085,180원, 확정손해금은 290,798원이고,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0. 8.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97,566원과 그 중 96,719,522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52,402,066원에 대하여는 2018. 11. 14.부터, 각 2019. 3.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20. 6.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B의 처분행위

- 1) B은 2017. 9. 30.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2. 5.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관한 원고와 B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 후인 2018.

3. 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8. 9. 6. 및 2018. 11. 14.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고가 B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채권 49,000,000원과 향후 약 10년간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282,459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2020. 10. 8.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0,984,6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위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40,984,63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282,459원을 공제한

100,702,171원(= 140,984,630원 - 40,282,459원)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인 150,497,566원 이내로서 위 가액배상 범위인 100,702,171원의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702,1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강릉시 대 208㎡

2. 강원도 강릉시 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1.19㎡

3. 강원도 강릉시 전 17㎡ -이상-